

- 공개시기 및 내용에 따라 기본공개, 개별공개 및 화관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위반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로 구분하며,
  - 기본공개는 인터넷(종합정보시스템)으로 사업장별 조사결과를 공개
  - 개별공개는 공개청구 시 청구자에게만 공개
- 비공개정보라도 치료에 필요한 경우 의료진\*에게 제공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제공하고 추후 승인받도록 함
  - 다만, 정보를 제공받은 의료진은 정보의 누설금지 의무를 가짐

###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5. 12. 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환경부공고제2015-721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구성재질이나 재활용방법 등에 관한 재활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활용사업자의 범위를 법률과 중복되거나 포괄적으로 재위임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동전화단말기의 회수·재활용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기능이 유사한 통신·사무기기군으로 통합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의견제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6,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fdrag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공고제2015-722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1913호, 2013. 7.16. 공포, 2014. 1. 1. 시행)으로 시행중인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달성 및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적 부담 완화 및 지원기준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재활용·회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의견제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6,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fdrag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3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1. 개정이유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986호, 2015. 1. 6. 공포, 2016. 1. 7. 시행)됨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 등의 행정처분 이력을 전산처리 업무에 포함시키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 효율성 제고 및 규제완화를 위해 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대형승합자동차 등의 검사유효기간을 완화하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고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검사기관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 절차 마련(안 제87조의2 신설)

검사진로 위치, 사업체 양도 및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지정사항의 변경은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와 같이 지정변경 절차를 마련하되 시행규칙에 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을 효율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검사원 정기교육 도입(안 제92조)

정기검사의 경우에도 종합검사와 같이 3년 단위의 정기적인 교육을 도입함에 따라 부실검사를 방지하고 자동차 검사의 신뢰성 및 교통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택시미터 사용검정 완화(안 제95조제1항)